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3. 23 선고 2020가단1346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피고B

변론 종결2021. 3. 9.

판결 선고2021. 3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,880,391원과 그 중 2,863,840원에 대하여 2020. 6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B에 대한 청구에 한함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재회

별지